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85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휘 · 박성민
최수진 · 김선교 · 강승규
박준태 · 정점식 · 김성원
강명구 · 김도읍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5) 신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5)부터 8)까지를 각각 6)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 8)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른 <u>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u></p> <p>6) ~ 9) (현행 5)부터 8)</p>

<p>다. ~ 마. (생략) 5.·6. (생략)</p>	<p>까지와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p>
------------------------------------	--